

■ 최신 법령 ■

[금융] 「볼커룰(Volcker Rule)」 최종안 승인

이승현 변호사 | 안상훈 변호사

국내 금융 관련 법령은 아니지만, 미국 금융 관련 법령 중에서 기존부터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던 볼커룰(Volcker Rule. 이하 “볼커룰”) 최종안이 승인되어 소개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1. 볼커룰이란?

볼커룰이란, 2008년 금융위기(Financial Crisis)를 거치면서 드러난 미국금융시스템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하여 미국 정부가 도입한 금융개혁법안인 도드 프랭크 법(Dodd-Frank act, 정식 명칭은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중에서 제619조(section. 619 “prohibitions on proprietary trading and certain relationships with hedge funds and private equity funds”)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위 입법안은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장(Federal Reserve Chairman)이었던 폴 볼커(Paul Volcker)가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에게 제안하여 입법되었다고 하여, 폴 볼커의 이름을 따서 볼커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위 도드 프랭크 법 자체는 이미 발효가 되었지만, 볼커룰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규정은 미국 내 금융감독기관들(Fed, FDIC, OCC, SEC, CFTC) 사이에 이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최종안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3년 12월 10일 위 금융감독기관들이 최종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최종안은 2015년 7월부터 실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2. 주요 내용

볼커룰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은행 등(banking entity)이 자기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와 헤지

펀드·사모투자펀드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① 자기계정거래의 금지

자기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란 트레이딩계정에서 자기자금으로(engaging as a principal for the trading account)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행위로서, 은행 등이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고객의 자금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투기적 목적 거래를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행 등이 자기자금으로 고위험, 고수익의 거래를 한 것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 헤지펀드·사모투자펀드에 대한 투자의 금지

또한, 은행 등이 헤지펀드·사모투자펀드의 지분(equity, partnership, other ownership interest)을 취득, 보유하거나 펀드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이 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역시 은행 등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은행 등의 부실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3. 전망

① 볼커룰 자체의 실효성

볼커룰은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실행되더라도 미국 내 은행들의 영업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에, 기존에 논의되던 적용예외조항 중에서 최종안에 빠진 조항들이 있어서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② 국내 은행들에의 영향

볼커룰은 미국 내 현지법인·지점이 있는 외국은행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므로, 국내 은행들의 미국 내 현지법인과 지점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큼니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의 미국 내 현지법인과 지점들이 현실적으로 볼커룰의 적용 대상인 자기계정거래를 거의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